

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이유

○ 2004.3월 충청권 3개 시·도(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)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이후, 2013.4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면서, 4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 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

○ 이에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○ 구 성 :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
○ 목 적 : 충청권관광상품 공동개발·홍보 및 관광진흥 도모

○ 운 영 : 4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
※ 2017년도 주관도 : 충청북도('18년 충남, '19년 대전, '20년 세종)

○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40백만원 균등분담) / 총160백만원

□ 주요사업

- 충청권 4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
-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공동 세일즈 마케팅
- 충청권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등

□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충청권 4개 시·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 관광 마케팅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필요
- 충청권 4개 시·도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에 대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가 요구됨

5. 검토의견

- 이번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
 - 2004년 3월 30일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시 3개 시·도가 충청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위하여 충청권 관광진흥 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, 2013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로 참여하였음.
 - 4개 시·도가 매년 4천만원씩 부담하여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보지 않아 규약안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음.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의 부담 근거와 지속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, 현재의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은 법령위반에 해당함.
- 따라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, 행정절차의 합법적 이행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2004년 만들어진 규약 중 “회원”과 “위원”의 용어불일치, “과반수 이상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용어 선택을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1부. 끝.